



공정거래위원회

수신 이현욱(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귀하
(경유)
제목 사건처리결과에 대한 회신

1.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결정과정·요금제에 있어서 담합의혹, 끼워팔기 의혹, 폭리 의혹 등 '부당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신고서」(2011.4.5.) 관련입니다.

2.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SK텔레콤(주), (주)케이티, (주)LG유플러스(이하 "이동통신 3사")의 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가 유사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폰 요금제와 관련하여 현장조사(2011.4.6.~2011.4.11.)를 실시한 바 있으나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다는 증거나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음.

○ 통화·문자·데이터통신 서비스를 함께 판매하는 행위 관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 및 불공정거래 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012-134호) V. 5. 가.에 따르면 끼워팔기는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하거나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권이 침해되는 부당한 행위여야 법위반에 해당됨.

- 경쟁제한효과와 관련하여, 끼워팔기의 경쟁제한효과는 주된 상품시장에서의 시장 지배력이 종된 상품시장으로 전이되는 것을 의미하나 현재 이동통신 3사는 모두 통화·문자·데이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유사한 묶음상품형 정액요금제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요금제 운영으로 인하여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움.

-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권 침해와 관련하여, 묶음상품형 요금제가 소비자에게 강제되는 것은 아니며 소비자가 사용패턴에 따라 음성·문자·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지불하는 기존 요금제에도 가입이 가능한 점, 이와 같은 묶음상품형 요금제로 인하여

